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-643호

『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』 보상계획 열람공고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-74호(2021. 4. 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『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, 물건 그밖의 권리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,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(권리자)께서는 토지 및 물건 조서 등 관련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보상대상 물건이 누락되어 있거나 면적, 수량, 구조, 소유자, 이해관계인 등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3월 27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: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위 치: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

다. 면 적: 60,653㎡

라. 사업시행자: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(조합장
김명산)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71, 1층(마천동)

2.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기 간: 2024년 3월 27일 ~ 2024년 4월 12일 (16일간)

나. 장 소: 조합사무실 [서울 송파구 마천로 371, 1층(마천동),

☎02-403-0066]

송파구청 주택사업과 [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(신천동),

☎02-2147-2901]

다. 이의신청방법: 열람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

3. 보상대상

가.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토지 등
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

나. 토지 및 물건조서:

구 분	서울시 송파구 마천동
토 지	308-6, 308-42, 308-55, 322-11, 308-11, 308-20, 322-15, 323-182, 308-47, 327-25, 311-16, 311-21, 311-22, 311-68, 311-69, 311-72, 311-73, 311-143, 311-114, 315-10, 320-15, 320-19, 321-9, 322-17, 323-7, 323-12, 323-19, 323-20, 323-176, 323-178, 323-186, 323-189, 323-220, 326-6, 326-9, 326-13, 326-10, 326-15, 327-18, 329-10, 330-9, 330-27, 373-3, 376-14, 376-23, 376-25, 211-120, 288-4, 308-35, 314-16
물건 등	위 토지상 소지한 지장물권(영업권) 및 권리관계 등 일체

※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, 주소불명·거소불명·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서 갈음함.

4. 보상의 시기: 감정평가 및 보상에 관한 협의통지 후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 보상

※ 감정평가 실시 및 협의상황, 인허가 절차 등 사업시행자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액 산정: 보상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(시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,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)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.

나. 보상금 지급: 보상계약 체결 후 현금으로 지급.

다. 감정평가업자 추천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자고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.

라. 보상절차: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→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→보상협의 및 계약체결(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)→보상금(현금)지급(수령 거부 또는 보상금에 대한 압류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공탁)

6. 기 타 사 항

가.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음.

- 나.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, 추후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.
- 다. 미분할 필지는 추후 현황측량 후에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이 있을 시 추후 개별 통지함.
- 라.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보상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추후 개별 통지함.
- 마. 사업 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(잔여지)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.
- 바. 보상절차, 조서열람, 감정평가사추천, 이의신청 등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(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, ☎02-403-0066)

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21호서식] <개정 2016. 6. 14.>

이의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
------	--	-----	--

신청인	성명 또는 명칭
	주소

상대방	성명 또는 명칭
	주소

이의신청 대상 토지 및 물건

이의신청의 요지

이의신청의 이유

재결일	재결서 수령일
-----	---------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재결서 정본의 사본 1부	수수료
		없음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쪽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